

# **2013학년도 제6차 <제309차 이사회 회의록>**

**2013. 12. 23.**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3학년도 제6차**  
**<제309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2 인

**1. 일 시 :** 2013.12.23(월) 07:30 ~ 09:55 (회의소집 통보일 : 2013년 12월 13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윤성복, 안재환, 문길주, 신희택, 주인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흥, 김선용 (11인)
- 감사 : 전성훈, 배홍기 (2인)

◎ 결석임원 : 없음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소의영, 기획처장 김민구,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3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심지훈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직이사 열한 분 중 열한 분 전원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김민구 기획처장이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희택 이사 이영현

이사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7. 심의안전

상임이사 이영현 : 제309차 이사회 심의 안전은 학법대우 제13-288호(2013.12.13)로 통보한 내용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동아리실1·2·아향식당 멸실처분 및 (가칭)카페테리아 신축 승인(안)은 제외하였고, 의안 제1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제2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제3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제4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 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 승인(안), 제5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재임용 동의(안), 제6호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외 건축 관련 승인(안), 제7호 권역외상센터 도비지원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안), 제8호 연불매입조건에 따른 의료기기(로봇수술기) 구입 승인(안), 제9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제10호 대우학원 수익사업체 신설 승인(안), 제11호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등 11개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 8. 심의내용

### 제 1 호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사장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는 의학계열을 제외한 전임교원 확보율(재학생 대비 교원 법정정원 기준)이 61.3% 수준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2014년 중앙일보 지표 대학평가 교수확보율 산정시 의학계열 교원이 제외될 예정임에 따라 지표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단기간에 전임교원을 많이 채용하기에는 예산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특임교원 연구교수 중 역량 있는 교원을 전임교원으로 전환하여 예산 절감 및 교수확보율, 연구력 등의 지표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이를 위해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1항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임교원 확보율 및 외국인교원 지표를 강화하고, 예산 절감 및 연구력 지표 등을 제고하며, 취업률·교원확보율 등 핵심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 2 -

정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한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예정이며, 제도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추가초빙계획, 주요 지표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윤성복 :** 교수 채용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 공고를 따로 하는지, 같아하게 되면 각 트랙별 지원자에 대한 자격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교수에 대해 차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학생들이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고 교원들 사이에서도 내부적인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많은 대학의 경우 비정년트랙이란 용어를 내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 명칭에는 트랙 자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진과 재계약 기준을 따로 정해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사 신상협 :** 내용을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아주대의 국제화 부문 순위가 19위 정도인데, 저희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비정년트랙 외국인 전임교원이 약 140여명 정도로 이를 통해 학생대비 교수의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국제화 지수를 많이 끌어 올렸습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외국인 중심으로 스카웃할 경우 외국어 강의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이 좋고, 임금에서도 약 30% 정도 차이가 나므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해 해당학과 교수들끼리는 알 수 있지만 그다지 구별하는 것 같지는 않고 학생들의 경우는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경희대에서는 비정년트랙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 윤성복 :** 비정년트랙을 시행하고 있는 타 대학 재단에도 제가 관여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비정년트랙 교수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강사 수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양 과목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년트랙 교수 수준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차등 때문에 불협화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우려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교육중점교수는 전원 외국인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연구중점교수의 경우 연간 6학점만 강의하지만 연구력은 A등급 이상을 유지하여야만 합니다. 비정년트랙 교수가 자격이 안 되면 재임용에서 탈락할 것이고, 능력이 좋을 경우 타 대학으로 가든가 정년트랙으로 새로 지원하여 교수로 채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한 차등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를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고, 미션을 정확하게 적시함으로써 기존 정년트랙 교수와의 차별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기획처장  
-3-

이사 이영현

겠습니다.

감사 전성훈 : 재임용 가능 횟수에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습니까?

이사(총장) 안재환 :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시 자격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중점교수는 타 대학과 비교해서 연구가 아주 뛰어난 교수들을 중심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한편, 교육중점교수는 지표에 잡히지 않는 특임교원 중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을 비정년트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이사 신상협 :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수 자격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임용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여야만 이 제도 운영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 문길주 : 저는 전체적으로 비정년트랙 제도 운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정년트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중점교수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검토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교원확보율이 높아져서 대학평가를 잘 받게 되는 것은 부수적인 결과이고, 포스텍·카이스트의 경우처럼 교수의 자질이 검증된 사람들을 많이 영입함으로써 평가지표가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재정상태가 넉넉할 경우에는 당연한 말씀이시긴 한데, 대학 운영에서 다른 부분들도 경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따른 다른 장점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타 대학에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그간에 지적하신 문제점들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말씀하신대로 교수의 질적인 면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시행착오가 없게끔 하고자 합니다.

이사 장 : 사실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사회에 상정을 하여야 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총장님과 이에 대해 상의했는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 이사회에 상정할 경우 채용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총장님께 의안을 올릴지 어떨지를 판단하시길 말씀 드렸는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사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도를 잘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사 신희택 :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적인 요소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약 연장에 관해서 학교 측에서는 상당한 판단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것들이 사후에 여러 가지 제한

<간석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천

되는 부분으로 작용될 수도 있으므로 각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있어서 교원학보율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수한 교원을 많이 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환경과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많은 중·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비정년트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윤성복** : 정년트랙 교수와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한 기준과 형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신규채용 및 재임용평가 시에 명확히 하여야 이사장님이나 여러 이사님들의 우려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적하신대로 평가기준은 명확히 하고자 하며, 정년트랙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미 조교수, 부교수에 대해서는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계약으로 따로 정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역할을 교육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중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맡은 영역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정년트랙 교수와 평가기준 및 연봉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 추후 비정년트랙 교원 신규 채용시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다음 이사회에는 학교 측에서 채용기준, 재임용기준 등의 평가기준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신상협**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최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으로 구분한다.</p> <p>1.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p>	<p>제2조(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으로 구분한다.</p> <p>1.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5 -

이사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2. '특별임용교원' 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	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이 규정은 특별임용교원 및 의료원 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임용교원 및 의료원 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u>(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제 2 호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교와 마찬가지로 의료원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료원의 경우 비정년트랙 전담교원의 종류를 교육중점교수 · 연구중점교수 · 진료중점교수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임용기간, 재임용 기준(업적평가 포함), 승진, 장기해외연수, 학회참석 및 출장, 연구년, 정년, 휴직 적용 등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도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추가초빙계획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윤성복 : 비정년트랙 추가 증원 12명 이외 원래 2014학년도 전임교원 초빙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의료원은 교원확보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료원장 소의영 : 의안 제4호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기존의 초빙계획에서는 정원을 4명을 감소시켰으며 사직대체 및 충원만 1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정년트랙 제도를 도입하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6- 2015. 2. 15.

이사 이영현

면서 추가 증원되는 부분은 현재 특임교원에서 검증된 인원을 전환하거나 연구강사 중 연구 능력이 우수한 분들을 선별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임상교원은 교원학보율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초교원의 경우에는 산정되므로 의료원도 별도의 비정년트랙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사장 :** 의료원은 비정년트랙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본교와는 또 달리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이사 주인욱 :**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의 경우는 임상강사, 연구강사, 조교수, 부교수 등 맡은 역할이 각각 잘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 칭만 정년트랙, 비정년트랙으로 달리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시간을 갖고 재임용의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재임용하여야 하는 교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간 내에서만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기본업적을 충족하여 계약해지하지 못하고 계속 재임용할 수 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장 :** 회의자료나 일정이 다소 급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의료원도 본교와 마찬가지로 차기 이사회에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신규임용 동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말씀하신 기준과 조건,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 주인욱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의료원 교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b>&lt;신 설&gt;</b>	<p>제1조의2 (교원의 구분)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임교원과 특별임용교원으로 구분한다.</p> <p>1. '전임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대우학원 정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용된 자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육중점교수, 연구중점교수, 진료중점교수로</p>
<b>&lt;간서명란&gt;</b>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사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구분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2. '특별임용교원'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간을 정하여 특별임용된 자를 말한다.</p>
제2조 (적 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정관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전임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적 용) 이 규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의료원 특별임용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제 3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명주소법 전면시행에 따른 정관 내 법인 및 수익사업장 주소변경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앞서 가결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도입에 따라 개정된 교원인사규정 적용을 위해 정관 내 교원의 임용기간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관 제48조 교원의 임용기간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윤성복 : 부교수의 경우 임용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사(총장) 안재환 : 신규임용은 3년으로 하고, 재임용시 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관할청의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에서 재직 중인 부교수의 재임용에 대해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내지 10년 범위 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정관에서 6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사 신희택 : 원(안)을 보면 사실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에 대한 별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상위 정관에서는 그냥 넓게 포괄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를 포괄하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총장  
- 8 -  
2011. 2. 15.

이사 이영현

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트랙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정관상에도 구분에 대한 근거를 두고 이를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대부분 대학의 경우 정관에서는 전임교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교원인사규정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근거를 따로 두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사 신희태** : 제 생각에는 해당 조문에 있는 특별임용교원과 같이 전임교원에 관한 임용기간에 대해서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는 일반 위임의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교원인사규정에 차별화를 두는 위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가 정관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조문을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세부사항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여 좀 더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사 박상일** : 제1, 2호 의안에서 가결된 교원인사규정 개정(안)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구분만을 새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관 수정에 따라 위임된 임용기간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는 임용기간을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해당 조문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되었지만, 비정년트랙으로 인해 이렇게 위임이 될 경우 교원인사규정에도 임용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다시 규칙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 장** :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관 개정(안)은 원(안)에서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세부사항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관에서 정한 위임에 따라 교원인사규정에서도 임용기간에 대한 내용을 다시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교 교원인사규정에는 임용 기간을 정관 제48조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료원 교원인사규정에는 임용기간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개별 계약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된 전임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용기간 내용을 다시 잘 정리해서 차기 이사회에서 의안으로 재상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외에 원(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최홍** :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김선용** :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찬성하다. )

**이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제48조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특별임용교원에 관〈간서명란〉

이사장 이수호

이사 김선용

이사 이영현

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을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세부사항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 (주 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에 둔다.	제4조 (주 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원천동)에 둔다.
<p>제41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의 총괄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제40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 온천동상가 : <u>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250번지 1-3호</u></li> <li>2. (삭제 2013.6.27)</li> <li>3. 군산빌딩 : <u>전북 군산시 중앙로3가 54-3번지</u></li> <li>4. 북성주차장 빌딩 : <u>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1가 63번지</u></li> <li>5. (삭제 2012.7.9)</li> <li>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 <u>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8-26번지</u></li> <li>7. 원천빌딩 : <u>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9-89회 4필지</u></li> </ol>	<p>제41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의 총괄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제40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 온천동상가 : <u>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15 (온천동)</u></li> <li>2. (삭제 2013.6.27)</li> <li>3. 군산빌딩 : <u>전북 군산시 중앙로 83 (중앙로3가)</u></li> <li>4. 북성주차장 빌딩 : <u>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96 (북성로1가)</u></li> <li>5. (삭제 2012.7.9)</li> <li>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 <u>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원천동)</u></li> <li>7. 원천빌딩 : <u>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번길 52-3 (원천동)</u></li> </ol>
<p>제48조 (교원의 임용기간) <u>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며,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li> <li>2. 부교수 : <u>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u></li> <li>3. 조교수 : <u>3년. 다만,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u></li> </ol>	<p>제48조 (교원의 임용기간) <u>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임용하며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고,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세부사항도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li> <li>2. 부교수 : <u>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u></li> <li>3. 조교수 : <u>3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u></li> </ol>
	<p>부 칙</p> <p>(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0 -

이사  
이영현

## 제 4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먼저 본교 신규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가결된 의안에 따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추가초빙 계획으로서 이를 통해 대학 등급별 정원감축, 중앙일보 평가 등 대학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본 대학교의 취약 부분인 외국인교수, 연구교수, 산학협력교수를 보완하고, 강의중점교수의 경우 기존 비정년 외국인교원 및 현 특별임용교원을 흡수하거나 신규 임용할 예정이며, 연구중점교수의 경우 현 특별임용교원(연구교수) 중에서 실적치를 검증한 후 초빙하고자 합니다.

추가 초빙 계획인원은 총 15명으로 교육중점교수A 1명, 교육중점교수B 1명, 연구중점교수 8명, 산학협력중점교수 5명입니다. 2013년 8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당초 계획인원 35명을 포함하면 2014학년도 전임교원 전체 초빙 계획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신상협 : 올해 승인된 교원 채용계획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도입에 따라 15명을 더 증원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그 중 교육중점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4명에 대해서는 특임교원에서 대체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교와 동일하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증원을 위한 추가초빙 계획(안)으로서 추가 초빙 계획인원은 총 12명으로 교육중점교수 2명, 연구중점교수 10명입니다.

교육중점교수는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 및 특별임용교원을 대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연구중점교수의 경우는 Post doc을 마친 외국인 등 연구능력 우수자에서 일부를 선발하고, 센터·연구소 소속 유급연구교수 중에서 연구업적, 연구비수주 우수자 중에서 일부를 선발할 예정이며, 특정 연구과제 수행목적의 무급연구교수 중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중 일부를 해당 연구비 급여지급 조건으로 연구과제 수행기간 내 계약기간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재현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주 인 육 : 본교와 마찬가지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도입에 따른 증원으로 보여지는데, 연구중점교수의 경우 우수 연구강사를 전환하거나 연구교원 중에서 연구비 재원 내에서 추가인건비 증액 없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신규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5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재임용 동의(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재임용 동의(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먼저 본교 재임용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임용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조교수 8명, 부교수 4명의 전임교원과 조교수 2명의 비정년외국인교원이 되겠습니다. 재임용 미신청자가 1명 있으며, 해당 교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이완근 조교수로서 최저 연구실적 미달에 따라 재임용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재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교육대학원 남가영 조교수의 경우 봉사실적이 높지 않음에도 부서장이 훌륭하다는 추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봉사실적이 높지 않다는 것이 주어진 최저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충족은 시켰지만 점수가 현저히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 장 : 본교 14명의 재임용 동의 원(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최 흥 :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2 -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임용 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의료원의 전임교원 재임용 대상자는 총 15명으로 조교수 11명, 부교수 4명의 전임교원으로 모두 연구업적 등 임용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을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임용 동의(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주인욱** : 의료원의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윤성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재임용 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대학교 본교 교원 14명의 재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의료원 또한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교원 15명의 재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 재임용 동의 내용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기계공학과	박진일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기계공학과	송봉섭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강경란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약학과	서원희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기계공학과	전용호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산업공학과	이성주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정보컴퓨터공학과	손태식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수학과	최수영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국어국문학과	이상신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정치외교학과	강신구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약학과	김형수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교육대학원	남가영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사

이사 이영현

소속	성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의 료 원	기초교육대학	Angela Russell	조교수 2014.3.1 ~ 2016.2.29 (2년)
	법학전문대학원	Sabrina Sohr-Schmidt	조교수 2014.3.1 ~ 2016.2.29 (2년)
	미생물학교실	김 경 민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순환기내과학교실	황 교 승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이비인후과학교실	김 현 준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가정의학과학교실	박 샛 별	부교수 2014.3.1 ~ 2020.2.29 (6년)
	핵의학과학교실	이 수 진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진단검사의학교실	이 재 옥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한 승 진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신장내과학교실	박 인 휘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정 다 은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이 장 훈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외과학교실	허 훈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성형외과학교실	이 일 재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영상의학교실	김 영 철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방사선종양학교실	노 오 규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핵의학과학교실	안 영 실	조교수 2014.3.1 ~ 2017.2.28 (3년)

- 이상 29명 -

## 제 6 호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외 건축 관련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외 건축 관련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외상센터 선정 시 인가조건에 따른 사항으로 헬리콥터로 후송되는 중증외상 환자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병원동 14층 옥상에 약 120여평 규모 15층 및 헬기패드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장례식장 멀실 및 증축계획에 따라 완공 전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장례식장 수요를 위해 임시로 최소한의 분향실, 안치실, 입관실, 사무실을 중앙창고 내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중앙창고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고 내 일부 공간을 2층으로 증축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증축예정인 장례식장과 연계된 광교방향 제2정문 도로를 개설하여 아주대학교와 의료원이 광교신도시와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위치의 옹벽 및 폐기물저장소

< 간서명란 >

이사장

주호석

이사

- 14 -

이사

이사

이영현

를 멀실한 후 장례식장이 완공되면 현재의 장소에 동일한 폐기물처리장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권역외상센터 증축에 따라 수전용량 증설이 불가피한 바, 해당공사는 2015년 예산에 반영하여 증설할 예정이었으나 권역외상센터 기초터파기공사 이전에 전력지중케이블 이설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2014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사예정기간 및 소요예산, 재원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회    택 :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외 건축 관련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의료원 병원동 증축 외 건축 관련 승인 내용

구    분		위    치	면    적	소요예산	재    원	비    고
병원동 증축	헬기착륙장	병원동 14층 위	398.41m <sup>2</sup> (120.52평)	약 15.1억원	부속병원회계 (의료원 부담)	
	중앙창고 내 2층	병원동 지하 1층 중앙창고	57.42m <sup>2</sup> (17.37평)	약 0.3억원	부속병원회계 (의료원 부담)	
광교방향 제2정문 도로개설(장례식장연계)		장례식장 예정부지 주변	편도 1차선 도로 약 200m 내외	약 10억원	본교 · 의료원 협의 부담	
폐기물처리장 멸실처분 및 개축		파워플랜트 후면	약 230m <sup>2</sup> (69.58평)	약 1.5억원	부속병원회계 (의료원 부담)	미상각잔액 21,250,750원
전기 수전용량 증설		일반선로 용량증설	10,000kw → 12,000kw	약 15억원	부속병원회계 (의료원 부담)	

#### 제 7 호 권역외상센터 도비지원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안)

이    사    장 : 권역외상센터 도비지원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선정된 보건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인    24회  
- 15 -

이    사    이    영    현

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비보조금 신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비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권역외상센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에 지원한 보조금 반환을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2013년도 10억원 및 2014년도 80억원, 2015년도 110억원 등 전체 도비지원액 200억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해당 연도별로 대상금액에 따라 보증보험은 각각 가입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 도비보조금 전체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이사회에서 포괄 승인하는 형태입니다.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세부 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사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박상일 :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권역외상센터 도비지원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권역외상센터 도비지원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 내용

가. 보증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

나. 보험상품 : 이행(지급)보증보험 (의료기관에 지원한 경기도비보조금 반환 지급보증)

다. 보험계약자 : 학교법인 대우학원 (아주대학교병원)

라. 피보험자 : 경기도

마. 보증기간 : 경기도에서 정한 기간

바. 보험가입금액 : 경기도비지원금 상당금액

(2013년도 10억원, 2014년도 80억원, 2015년도 110억원)

사. 이사회 승인 : 경기도비보조금 전체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포괄 승인

\* 연도별로 대상금액에 따라 보증보험은 각각 가입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이루어지는 권역외상센터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별도 이사회 승인 없이 금번 이사회 심의로 승인된 것으로 함.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사장  
- 16 -

이사 이영현

## 제 8 호 연불매입조건에 따른 의료기기(로봇수술기) 구입 승인(안)

이 사 장 : 연불매입조건에 따른 의료기기(로봇수술기) 구입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봇수술은 개복 또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 합병증, 출혈이 적어 환자가 안전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 수요자의 실비보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로봇수술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본원 수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대학병원의 경우 2~4대까지 보유하면서 대당 월평균 30~35건 정도의 수술을 하고 있으나, 우리 병원의 경우 2008년 10월에 1대를 도입하여 월평균 43건 정도의 수술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술효율성이나 병상회전율 증대 면에서도 추가 도입에 따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예산 면에서나 의료원 내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일시불 구매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일시불 또는 원화리스 포괄계약보다 나은 조건으로 제시된 업체 할부프로그램에 따라 로봇수술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 및 이자율, 할부기간 등 기타 자세한 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주인욱 :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도입방식도 낮은 가격에 잘 구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 윤성복 : 285쪽에 도입 후 누적 손익과 추정 손익 자료가 있는데, 이 정도면 몇 건의 로봇수술을 시행한 것인지, 신규 23건이라고 나타낸 것에 대해 기존 수술건수와는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원장 소의영 : 2008년에 첫 도입을 하였으며, 지난 5년 동안 약 2,000례 정도로 현재 월평균 44건 정도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있는 23건은 신규 도입장비의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위한 월평균 최소건수를 의미합니다.

이 사 장 : 287쪽 Remarks에 분기별 리스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전체 취득가액이 오르게 되는 빌미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의료원장 소의영 : 저희가 계약할 때에 이를 분명히 해서 문제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윤성복 : 장비운영에 따라 이익을 나누는 공동운영장비 도입과는 다른 것이지요?

의료원장 소의영 : 그렇습니다. 이 건은 단순히 할부로 의료기기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 사 장 : 이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 신상협 :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주도석

이사

이화환  
- 17 -

이사 이영현

이사최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연불매입조건에 따른 의료기기(로봇수술기) 구입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연불매입조건에 따른 의료기기(로봇수술기) 구입 승인 내용

가. 도입방식 : 업체 할부프로그램

⇒ 장비가 + 고정금리 연 3% 적용 / 분기별 1.8억(연간 약 7.2억) / 약 5년간

나. 금액 : 35.4억원 [장비가액(32.8억) + 이자(2.6억)]

다. 기타사항 : 2013학년도 병원회계 결산추경시 반영 예정

### 제 9 호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이사장 : 대우학원 임원 선임(안) 발의.

본 법인 임원 중 신희택 이사가 2014.2.14부로 임기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 후임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정관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은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신희택 이사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겠습니까?  
(신희택 이사 회의장에서 퇴장하다.)

이사장 : 신희택 이사의 후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박상일 : 그 동안 대우학원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해 오신 신희택 이사의 연임을 제청합니다.

이사주인욱 : 신희택 이사의 연임을 동의합니다.

이사문길주 : 재청합니다.

이사장 : 신희택 이사의 연임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이 찬성하다.)

이사장 : 그러면 참석이사 11인 중 신희택 이사 본인을 제외한 10인의 찬성으로 신희택 이사를 2014.2.15부터 임기 4년의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수도석

이사 이재현  
- 18 -

이사 이재현

( 신회택 이사 회의장으로 입장하다. )

이 사 신 회 택 : 대우학원 이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임을 승낙합니다.

### ■ 대우학원 임원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직 명	성 명	임 기	비 고	직 명	성 명	임 기	비 고
이사장	추호석	2011.9.18 ~ 2015.9.17	이사장임기 2013.4.19~	이사장	추호석	2011.9.18 ~ 2015.9.17	이사장임기 2013.4.19~
이 사	윤성복	2013.4.28 ~ 2017.4.27		이 사	윤성복	2013.4.28 ~ 2017.4.27	
이 사	안재환	2012.3.4 ~ 2016.3.3	교육이사	이 사	안재환	2012.3.4 ~ 2016.3.3	교육이사
이 사	문길주	2012.3.31 ~ 2016.3.30		이 사	문길주	2012.3.31 ~ 2016.3.30	
이 사	신회택	<u>2010.2.15 ~ 2014.2.14</u>	교육이사	이 사	신회택	<u>2014.2.15 ~ 2018.2.14</u>	교육이사
이 사	주인욱	2013.4.19 ~ 2017.4.18	교육이사	이 사	주인욱	2013.4.19 ~ 2017.4.18	교육이사
이 사	박상일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 사	박상일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 사	신상협	2012.3.19 ~ 2016.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신상협	2012.3.19 ~ 2016.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이영현	2013.4.19 ~ 2017.4.18		이 사	이영현	2013.4.19 ~ 2017.4.18	
이 사	최홍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 사	최홍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 사	김선용	2012.2.7 ~ 2016.2.6		이 사	김선용	2012.2.7 ~ 2016.2.6	
감 사	전성훈	2011.5.13 ~ 2014.5.12		감 사	전성훈	2011.5.13 ~ 2014.5.12	
감 사	배홍기	2013.4.28 ~ 2016.4.27		감 사	배홍기	2013.4.28 ~ 2016.4.27	

### 제 10 호 대우학원 수익사업체 신설 승인(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수익사업체 신설 승인(안) 발의.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회택

이사 이영현

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기본 목적 외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로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며, 법인이 신설하고자 하는 회사는 아주대학교 부속병원 및 대우의료재단 산하병원에 공급되는 각종 의료기구, 진료재료, 의료소모품 등을 효율적으로 구매 공급하는 주식회사로서 산하병원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물품구매에 따른 수익을 학교법인과 산하병원으로 환원시키고, 특히 학교법인의 수익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여 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출자지분 및 임원 정수 등 수익사업체 설립에 대한 개요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수익사업체 설립에 대한 취지 및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 외 회사의 상호, 사무소 등 설립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며, 추후 이사회에 별도로 회사 신설에 따른 경과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채 흥 :** 이사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이사회에서는 대우학원 수익사업체 신설에 대해 설명해 주신 기본적인 사항만을 승인하고, 상호 결정 등 회사 설립에 관한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이사장님께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 신희택 :** 원(안) 및 위임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선용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 및 위임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수익사업체 신설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며, 이 외 회사의 상호, 사무소 등 설립에 관한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대우학원 수익사업체 설립(안)

구 분	내 용
상호 및 사무소	설립절차 진행 과정에서 결정 / 추후 정관개정(안)을 통하여 보고 및 반영
출자지분	학교법인 대우학원 100% 출자 ※ 자본금 : 5,000만원 / 발행주식수 10,000주 (1주당 가격 : 5,000원)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지현  
-20-

이사 이영현

임원정수	이사 3인, 감사 1인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술재료, 진료재료, 일반소모품 등 공급 및 창고관리 업무</li> <li>◦ 수액창고 수탁관리 등 물류배송 업무</li> <li>◦ 병원 세탁물 관리 업무</li> <li>◦ 의료·입원용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장 운영 등</li> </ul>
협약예정병원	아주대학교 부속병원, 거제 대우병원 등

## 제 11 호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이사장 :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제1차 추경예산 대비 200백만 원 감소한 17,91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군산빌딩 임차인인 스마일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및 수익사업체 신설에 따른 자본금 출자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 이영현 상임이사가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사장 : 전성훈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전성훈 :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와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2013학년도 법인회계 제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액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증감
수입	전입금수입	4,957	4,957	0
	기부금수입	20	20	0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1 -

이사 이영현

	예금이자수입	2,400	2,400	0
	수익재산수입	1,757	1,757	0
	잡수입	1	1	0
	고정자산매각대	2,102	2,102	0
	고정부채입금	175	375	-200
	전기이월자금	6,505	6,505	0
	계	17,917	18,117	-200
지출	보수	586	586	0
	관리운영비	1,135	1,135	0
	지급이자	36	36	0
	법정부담전출	5,648	5,648	0
	경상비전출	1,207	1,207	0
	예비비등	101	101	0
	기금적립	2,159	2,159	0
	투자자산지출	50	0	50
	고정자산매입비	150	150	0
	고정부채상환	782	452	330
	차기이월자금	6,063	6,643	-580
	계	17,917	18,117	-200

## 제 12 호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 및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취득 승인(안)

**이사장 :** 본 안건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을 위한 심의로서, 2013.12.13자 개최통보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안건이나 별도로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마침 오늘 이사님들께서 전원이 출석하셨으므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여러 이사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 승인(안)을 현장 발의하여 광교 토지 매입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사 박상일 :** 현장발의에 동의합니다.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현장발의에 찬성하다. )

**이사장 :** 다름 아니라 의료원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광교신도시 도시지원시설 매입과 관련하여 꾸준히 부지매입(안) 및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후 부지 활용 및 매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별다른 결론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간서명란>

이사장

주호석

이사

이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내년 1월 아주대학교병원과 연접한 도시지원 용지에 대해 분양입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입검토 대상 토지는 회의자료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도시9-②구역으로 면적은 4,367.5평, 협의당시 금액은 약 297억원 정도입니다. 용도는 교육연구, 업무, 벤처, 도시형공장, 기숙사, 의료, 문화 및 복지, 근생 1·2종 10% 등입니다. 본 안전은 이러한 대상 토지를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고, 이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인 기금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양조건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대형 건설회사와 협력하여 해당부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일단 고려하고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학교법인에서 독자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예전에 협의했던 대로 평당 650여만원 정도에 수의계약으로 5년간 무이자 상환 조건을 다시 요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게 되더라도 향후 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용도상 의료원과 관련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사회에서 토지취득을 승인해 주신다면 의료원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토지 취득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해보고자 하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내년 1월로 예정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고자 안전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주 인 육 :** 입지조건이 좋아 여건이 된다면 도시9-①구역에 해당하는 2,287평도 같이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삼성병원의 경우 좀 더 외형적인 확장을 하고 싶어도 주변 토지가 종종부지인 관계로 이를 매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과 비교해서도 간호사기숙사로 인해 지방에 있는 우수 간호인력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 문 길 주 :** 앞으로 장기요양 등 노인 관련 병원들은 팽창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어 입지도 괜찮은 편인 것 같고, 관련 시설을 특화시키면서 경기도의 지원까지 받게 된다면 경쟁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분당서울대병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시설수용한계도 있기 때문에 광교신도시의 부지 매입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 박 상 일 :**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더 좋은 조건에 도시9-①, ②구역 전부를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규모가 좀 더 커진다면 경기도나 경기도시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 진  
- 23 -

이사 이영현

공사 측과 협의하기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사장 : 아직 관련부지 매입규모나 평당단가 등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이런 부지 매입에 대한 세부사항과 수익용 기본재산(기금)의 처분 등에 대해 이사회에서 제게 위임해 주신다면 아까 설명 드린 방안들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부지를 실제로 취득하거나 이를 위해 기금을 처분하는 경우, 추후 별도로 이사회에 진행 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 윤성복** : 내년 1월에 곧 입찰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부지매입을 위한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이사장님께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안) 및 위임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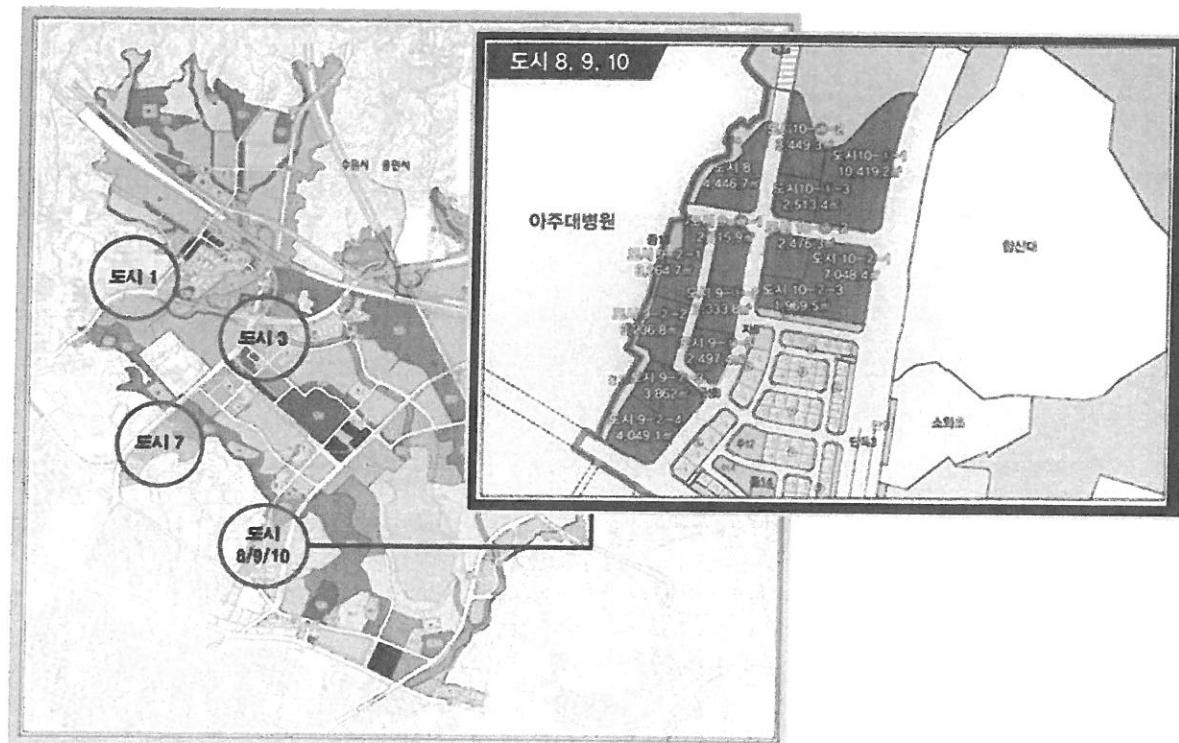
이사최홍: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찬성하다. )

이사장 : 그러면 수익용 기본재산(기금) 처분 및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취득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며, 광교부지 매입 및 이를 위한 기금(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광교 유보 도지시원 용지 매입 관련

#### ▶ 분양대상지역



〈간서명 란〉

## 이사장

한국

이사 56 24/2월

## 이사 이영희

▶ 분양대상토지 면적 및 금액

(단위 : 천원)

구 역		면적(m <sup>2</sup> )	감정가	단가/m <sup>2</sup>	면적(坪)	단가/坪	구역감정가	비 고
도시 9-①	1	2,715.9	6,436,683	2,370	2,287.0	7,715	17,645,067	* 10F 이하
	2	2,333.8	5,414,416	2,320				
	3	2,497.4	5,793,968	2,320				
도시 9-②	1	3,264.7	6,137,636	1,880	4,367.5	6,810	29,742,585	* 10F 이하 * 9구역 합계 ✓ 473.9억원 ✓ (6,655坪) ✓ 7,121천원/坪당
	2	3,236.8	5,955,712	1,840				
	3	3,862.0	8,457,780	2,190				
	4	4,049.1	9,191,457	2,270				

※ 전폐율 : 60% / 용적률 : (8, 9구역) 300%, (10구역) 400%

\* 용도 : 교육연구, 업무(오피스텔 제외), 벤처, 도시형공장, 기숙사, 의료, 문화 및 복지, 균생 1·2종 10% 등 (용도 외 불허)

▶ 분양일정

- \* 1차 공고('13.12월 ~'14.1월) → 입찰('14.1월말) → 재입찰('14.1월말) → 수의계약(유찰시, '14.2월 이후)
- \* 1순위 : 블록 전체 분양 → 2순위 : 필지별 분양

##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09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쇠 흥 : 이사장님과 안재환 이사님 그리고 이영현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참석임원 11인 전원이 쇠 흥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 10. 폐회선언

이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09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 09시 55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13년 12월 23일

이사장 추호석

이사 윤성복

이사 안재환

이사 문길주

이사 신희택

이사 주인숙

이사 박상일

이사 신상협

이사 이영현

이사 최홍

이사 김선용

감사 전성훈

감사 배홍기